

‘지방재정’ 궁금증 해결

글 _ 명 삼 수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Question

교육경비 보조

예산의 투명성,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편성 예방을 위해 예산편성 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급처의 명확한 부기 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교육경비 지원 예산 편성 시 명확하게 부기하고 의회에 설명을 거쳐 지원하고 있다.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함이 타당한지 궁금하다. 혹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결정이 되었을 때 지원이 불가한지도 알고 싶다. 그리고 사업대상, 금액이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업은 교육경비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알고 싶다.

Answer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같은 기준 제6조 제2항(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6)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이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6) 지원을 지원할 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와 더불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지 말라고 결정되었을 때에 지원 가능 여부는 현재 귀 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해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의결되었고,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Question

사단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민간단체(또는 주식회사) 1개와 자치단체(8개)가 공동으로 일정한 사업목적에 위하여 사단법인 또는 SPC(특수법인)를 설립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목적에 필요한 경비 등 사업비를 지방예산에 반영하여 목적 법인의 사업추진 분담금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또는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조례를 제정하여 분담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는 목적 법인에 분담금 출연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Answer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재정지원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예외 조항의 해석은 법의 취지를 살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당해 사단법인·특수목적법인(SPC)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될 경우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위임등) 및 자치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에 의거해 ‘박물관’을 ‘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인 문화재단에서 박물관 운영을 제3의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에는 단서 조항이 없다.

Answer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012. 7. 31. 행정안전부훈령 제218호)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위탁금’ (307-05)은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을 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2012. 12. 26. 행정안전부예규 제439호)의 ‘II.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예산절감 노력’에 따르면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경리관(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방계약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계약을 통하여 민간수탁자로 선정된 문화재단에서 제3의 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은 재정운영 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Question

세무담당 특정업무경비

우리 구청은 2010년 7월 조직개편으로 교통과에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기 위해 교통징수계를 신설하여 세무직 2명, 일반직 5명 총 7명이 특별회계 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는 세무직 2명, 일반직 5명 총 7명이 체납과태료(세외수입)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교통과 교통징수계도 세무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인지 궁금하다. 참고로 세무과는 전 직원(35명)이 세무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지만 교통과는 교통징수계 전부(5명)가 세외수입 징수를 전담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라고 되어있고, 여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라고 써어있어서 교통징수계는 세외수입만 해당되고 지방세는 해당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Answer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012. 7. 31. 행정안전부훈령 제218호) 제4조에 따른 [별표 2 업무추진비의 특정업무경비]는 감사·세무·예산담당 공무원 등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통과에서 교통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글 _ 오 정 의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Case 0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00, 2013. 3. 22)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보다 추가로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3월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개정법률안 공포일(2013. 3. 23) 이전에 취득세를 기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감면에 따른 취득세가 환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분부터 감면된다. 그 적용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이다. 원시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환급대상이다. 공포일 후 환급 시 환급액에 대한 환급이자(2013년 3월 1일 이후부터 연 3.4%)가 발생한다.

● 감면기간 : 2013. 1. 1 ~ 2013. 6. 30

● 감면대상 :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 감면내용

- 9억 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75% 감면(2% → 1%)
- 9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50% 감면(4% → 2%)
-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 취득세 50% 감면(4% → 2%)
- 12억 원 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 취득세 25% 감면(4% → 3%)

Case 02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반적 추정규정(제94조) 적용범위 조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82, 2013. 3. 21)

지난 2011년 2월 8일 통보된 '새 지방세법 추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59호 46~48p)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운영지침 내용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반적 추정규정 제94조의 적용범위가 감면 조문별로 조정되었다.

2011년 1월 1일 분법 시 지특법 상에 일반적 추정규정(제94조)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추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정)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같은 각 호는 현행 감면세액 추정이 조문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어 취득세 추정의 일반화를 위해 별도의 추정조문을 마련한 것이다.

2011년 2월 8일에는 신설 추정규정의 운영지침(지방세운영과-559)을 통보하였는데, 감면조문에 개별추정규정이 없더라도 '직접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면 신설된 추정규정(제94조)을 적용하되 감면조문에 '직접사용'이 없는 경우 신설된 추정규정 적용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운영지침에서 적용범위를 '직접사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입법취지에 반해 적용대상 누락이 발생했다.

- 종전의 개별추정규정을 삭제한 경우 : 15개 조문

현행 일반적 추정규정인 제94조가 적용되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개별추정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직접사용'이란 규정이 없어 종전지침에 의할 경우 추정 곤란

- 취득목적, 사용용도가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 3개 조문

중전 규정에서 개별추징규정은 없었으나, 현행 조문 상에는 취득 목적이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동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치 않을 경우 추징이 필요함에도 '직접사용' 규정이 없어 중전지침 적용에 혼란 초래.

그래서 2011년 1월 11일 분법 시 신설된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대상을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당초** '직접사용' 이 있는 경우로 한정

● **변경** '직접사용' 이 없더라도 종전에 '개별추징규정' 이 있었던 조문과 '사후 관리' 가 필요한 조문은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대상으로 지침 조정(18개 조문 추가)

Case 03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6, 2013. 1. 29)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명의신탁약정의 종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무조건 과세라는 문제가 발행했다. 이에 명의신탁약정별 취득세 납세의무 및 과세방안 등을 검토·마련하여 납세불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적발 시 그 원인이 된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을 파악(진술서 등 참조)한 후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해야 한다. 3자간 동기명의신탁일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되, 부과체척기간은 5년이 적용(지방세운영과-5588, 2010. 11. 26)된다.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이전 시 등기시점을 취득시기로 하여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계약명의신탁일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미과세한다. 다만, 법인장부로 취득(타인명으로 등기되었으나 자산 등으로 기장)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약정과 관련 없이 취득세를 과세(사실상 취득)한다.

Case 04

대법원 2010다52799(2010. 10. 28) 판결에 따르면, 3자간 동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동기명의신탁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동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1, 2013. 1. 11)

지방세 관계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동 지침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일몰기한 연장조치가 필요하여 관련 조항 일부가 개정되었다.

- 안전행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1차적 직접처리 강화(안 제5조)(현행) 지방세관계 법규해석 민원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위가 1차적으로 처리하고, 이후 재질의 또는 관원에 한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회신
(개선)안전행정부에 접수되는 민원 중 입법취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 용어상 불확정개념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과세권자가 재질의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 불복절차 진행중인 민원에 대한 반려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신설) 당해 민원에 대한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안에 대한 민원은 반려가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 분법(2011년 1월)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 조문 변경(안 제7조)
구지방세법 제87조제2항 → 지방세법 제142조
- 유효기간 연장(안 제8조) 등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3년 범위 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